[공지] '24년 3월 『교사근무환경개선비』 신청 안내

안녕하세요.

'24.3월「교사근무환경개선비」 신청 기간은 <u>3.22(금) ~ 3.29(금)까지</u>입니다.

가.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신청기한

- (<mark>어린이집</mark>) <u>신청</u>기간 : '24년 3월 22일(금) 09:00 ~ 3월 29일(금) 23:59
 - ※ 시군구에서 반려 시 지원비 지급일(시군구마다 상이)전까지 재신청 가능
- (시군구) 정정·승인기간 : '24년 3월 22일(금) 09:00 ~ 4월 5일(금) 23:59

나. 유의 사항

- 어린이집 신청 시
 - ▷ 소급 신청은 해당 신청 월 포함 3개월에 한함
 - 예 : '24년 3월(당월) 신청 시에는 '24. 1월분, '24. 2월분 까지만 가능
 - ▶ 정원 40인 이상 시설의 교사겸직원장은 지원 불가
 - ▶ 정원 40인 이상 시설의 교사겸직원장은 지원 불가
 - ▶ 대상월 담임교사로서 15일 이상 근무하지 않은 경우 보육교사겸직원장 지원 불가
- 시군구 승인 시
 - ▶ 실제 근무일수가 15일 이상 등 지원요건에 해당 되는 지 확인
 - ▷ 소급신청 분에 대하여 승인하는 경우 해당 월에 기존 신청내역이 있는지 필히 확인하여 중복 승인이 되지 않도록 유의

다. 세부 사항

○ 지원 조건

인가받은 어린이집 및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(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) 및 <u>연장보육전담교사, 담임교사와</u> 연장보육전담교사를 대체하는 대체교사 및 비담임교사에게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지급

- 어린이집에서 평일 8시간 원칙으로 근무하고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로서 월 15일*(실제 근무일수)이상
- 담당 반 배정 (원장의 경우 담임교사 겸직 임면보고 및 반 배정으로 **담임업무수행**)
- ※ 신학기 적응기간(3,4월)에 한하여 대체교사 유휴인력 어린이집 지원 시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지급 가능
- ※ 기본, 연장보육 대체교시는 보육통합시스템에 근무증빙이 가능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
- ※ 대체교사의 경우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상 반 배정된 정보가 존재해야 시스템 신청 기능
- ※ 24년 보육사업안내 지침 변경에 따라 연장보육전담교사는 연장전담교사인건비 미지원 교사도 포함('24년1월부터 시행)

- 지원금액 : 일 8시간 근무 기본보육 담임교사 및 대체교사 지원비 **월 26만원**
 - * 비담임교사 직위 경우, 일 8시간 근무 26만원 지원비 신청 제외 일 4시간 연장보육 전담교사 및 대체교사 지원비 월 13만원 교사검직원장 지원 월 7만5천원
 - ※ 평일기준 8시간 근무와 4시간 근무를 합하여 월 15일 이상 담임으로 근무한 경우 월 13만원 지급가능
-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지원 제외
 - 3~5세 누리과정(기본보육) 담당교사
 - 보육교사(특수교사 포함)를 겸직하고 있는 대표자

※ 어린이집에서 담임교사로서 실제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일 경우 : ①근로자의 날, ②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 공휴일(일요일 제외) 및 대체공휴일, ③월5일 이내 휴가, ④5일 이내의 주중 법정보수교육 참석일도 근무 일수에 포함 가능. 단, 원장사전직무교육은 인정 불가

근무일수와 관련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상에서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신청이 불가할 경우, 지자체에서는 교육수료증(④5일 이내의 주중 법정보수교육에 해당)또는 교사출근부(③주5일 이내 휴가에 해당)를 첨부하여 공문으로 요청하여 주십시오.

수신처 :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, 한국사회보장정보원

상세 지원 내용은 보육사업안내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라며, 궁금하신 사항은 아이사랑 헬프데스크(☎1566-3232→1번)에 문의해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